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구분	선박 보유량	자본금	경영 형태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 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일반 화물운송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10억 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회사일 것
	수산물운송	활·선어운송	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냉동어운송	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비고

1.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각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